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01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박성민 · 박준태 · 김태규
김상훈 · 조지연 · 박충권
엄태영 · 구자근 · 정동만
박형수 · 김기현 · 서범수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전기·수소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 및 시장점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나, 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한정된 지원으로 자동차제작까지 포함한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의 개발·설계·제조·조립·유통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등을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기술개발, 구매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장 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의 구매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8조).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동차”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를 말한다.
2. “미래자동차산업”이란 미래자동차의 개발·설계·제조·조립·유통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은 제외한다.
3. “미래자동차사업자”란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미래자동차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미래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제5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자동차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생산된 미래자동차 관련 세액공제
2. 미래자동차 생산을 위한 설비, 시험·검증·실증 및 양산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탄소저감·에너지효율 향상 및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미래자동차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미래자동차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 및 실증 인프라 구

축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8조(미래자동차 우선 구매)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장 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이하 “우선구매대상 미래자동차”라 한다)의 구매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미래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구매계획의 수립·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계획의 수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 미래자동차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구매계획의 수립·시행, 구매실적 등 자료의 제출 및 공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9조(자료 제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사업자와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